

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지침

제정 2020. 07. 22.

개정 2022. 11. 15.

개정 2023. 03. 06.

개정 2023. 11. 2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국립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국내 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(이하 “학술단체 지원 사업” 이라한다)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학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박물관의 학술 연구단체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.

제3조(업무의 주관)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, 관리 및 평가 업무는 박물관 학술연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.

제2장 지원 범위

제4조(지원 분야)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는 해양관련 분야의 학술행사 (학술대회, 세미나, 포럼 등) 개최와 학술지 발간 분야로 한정한다.

제5조(지원 금액) ① 학술행사 개최 지원금은 학술단체 당 5백만 원 이내로 한다. 단, 국제학술대회, 종합학술대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학술지 발간의 지원 금액은 학술단체 당 5백만 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료 편찬 및 서적 발간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를

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제6조(지원 대상)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한다.

제7조(지원금지 및 배제) 전년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학술 연구단체가 학술대회 등 사업종료 후, 박물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(논문집 포함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비 집행 기간)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의한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사업비의 집행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3장 신청 및 접수

제9조(신청 서류 제출) ① 지원 대상 학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2. 사업 계획서[별지 제2호 서식]
3. 사업비 산출내역서[별지 제3호 서식]

② 학술행사 개최 분야의 사업비 신청 기준은 [별표 제1호 서식]과 같다.

③ 학술지 발간 분야의 사업비 신청 기준은 [별표 제2호 서식]과 같다.

제10조(서류 제출 방법)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술단체는 제9조의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.

제4장 심의위원회

제11조(구성과 임기)

- ① 위원회는 총 5인 이내의 내부직원으로 구성하며 학예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1년 단위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와 대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.

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간사) ①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을 담당한다.

- ② 간사는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: '22. 11. 15.>

제14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1. 학술단체 지원 사업 기본 지침 및 세부 시행 기준
 2.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 조정
 3. 기타 학술단체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) 위원회는 지원을 신청한 학술단체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장 심사 및 사업선정

제16조(학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) ① 학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 심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② 학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 시 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00점 만점으로

산출한다.

③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 후, 이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며, 평균 점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<신설: '23. 03. 06.>

④ ③항의 산출결과 69점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: '23. 03. 06.>

제6장 지원금 교부 및 관리

제17조(지원 결정 통보 및 교부 신청)

① 박물관은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정된 사실을 신청 학술단체에 통보한다.

②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학술단체는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[별지 제6호 서식]의 서류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학회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(교부 방법 및 시기) ① 지원 사업비는 해당 학술단체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. <개정 : '23. 11. 28.>

② 지원금 수혜 학술단체의 대표는 행사개최 30일 전에 행사 일정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: '22. 11. 15.>

제19조(지원금 집행 관리) ① 지원금이 결정되어 통보된 이후 사업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박물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<삭제 : '23. 11. 28.>

③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.

1. 카드전표, 세금계산서(공급 받는 자 : 단체장 명의, 계좌 이체 입금증 포함)
2. 1만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여 금전등록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가능
3.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
4. 사업 책임자의 지불 확인서

- 제20조 (기타 준수 사항)** ① 지원금을 받는 학술행사는 박물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. 단, 행사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개최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학술단체의 대표는 신청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- ③ 학술단체는 지원금 수령 후 수입·지출 사항을 명확히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금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⑤ 박물관은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학술단체의 대표에게 변상조치의 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⑥ 기타 박물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사항과 행정 체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⑦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는 박물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박물관이 자료의 보완이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장 결과 보고

- 제21조(결과 보고)** ① 학술단체 지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[별지 제7호 서식]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: '22. 11. 15.>
- ② 지원금 집행 내역서에는 사용경비의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결과보고서 제출 시, 계획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경우 [별지 제8호 서식]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금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 기간 내에 학술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지를 발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,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⑥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 및 제출한 결과 보고가 허위로 판명된 단체는 향후 5년간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. 단, 결과보고서 지연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⑦ 기보조금 이자액이 발생한 경우 동일 목적의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: '23. 03. 06.>

제22조(국립해양박물관 학술단체 지원 사업 수행 표기) 학술단체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는 반드시 주최명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: '22. 11. 15.>

제8장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

제23조(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) ① 성과평가는 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사업계획서, 사업결과보고서, 지원금 집행 내역서, 사업성과물을 참조하고 사업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
③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, 이의 전체 평균을 산출한다.

④ 평균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⑤ 성과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, 80~89점은 B, 70~79점은 C, 69~60점은 D, 59점 이하는 E로 등급을 부여한다.

⑥ 성과평가 점수가 C등급 이하인 단체는 향후 5년간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. <신설 : '22. 11. 15.>

제24조(사업 실적 자료의 활용) 사업결과 제출된 사업실적 자료 중 학술행사 관련 각종 간행물과 학술지는 박물관에서 학술·전시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부칙(2020. 07. 22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1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03. 06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1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